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 7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모욕

피고인 A

검사 조하림(기소), 이형우(공판)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피고인은 2018. 9. 10. 20:34경 경기 의왕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 등 17명이 함께 참여하는 E 단체대화방에 "D는 가슴 작아서", "섹스좋아함"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 11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10.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 단체대화방에"병 깨고 저년 얼굴부터 보지까지 조금씩 찢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0항 기재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와 같이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모친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E 단체대화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및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판사 한옥형